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. 8. 13 선고 2015가단60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변론 종결2015. 7. 16.

판결 선고2015. 8. 1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21/77 지분에 관하여,

나. 피고 C, D, E은 각 14/77 지분에 관하여,

다. 피고 F은 6/77 지분에 관하여,

라. 피고 G, H 각 4/77 지분에 관하여

각 공주시 I 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집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을 철거하고, 공주시 I 대 217㎡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. 5. 11. 접수 제136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망 J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79. 6. 16. 접수 제88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다. 망 J는 1997. 7. 8.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, 자녀인 피고 C, D, E과 망 K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고, 망 K은 2014. 4. 19.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F, 자녀인 피고 G, H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.

[인정근거]

피고 B, C, D, E, G: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

피고 F, H: 갑 제1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,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소유한다고 추정되므로, 피고들은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신동준